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2. 15.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2월 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5년 12월 11일

다. 상정일자: 제35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
(’95.12.15.)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이춘기

가. 개정이유

○정부의 재난 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
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총무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
보강지침이 ’95년 11월 11일자로 서울시
에서 시달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 개편으로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
대 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도 재난관리계
를 신설하여 종전 조례 제6조제5항제5
호의 규정인 도시방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
조정으로 개정하여 전담토록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사고를 사
전에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재
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민방위재난예
방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는데?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내무부 지침
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
경하게 됨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지침에 따라 변

경한 것은 알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건
의하여 민방위재난예방과로 변경할 용의
는 없는가?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본 취지를
서울시 경우,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
이 소요되는가?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
리과 직원은 기존의 인력으로 조정하되,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장 1명만 증원하는
데 증원된 계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게 됨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기존의 계장 T/
O로 조정되는가?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계장 T/O가
1명 증원되는 것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년월일: 1995년12월9일

제 출 자: 마 포 구 청 장

1. 개정이유

정부의 재난 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
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 관리 업
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총무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안제6조)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8.4. 법률 제4959호) 제
15조,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5.5.16. 대통령령제14647호)제
10조제3항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제6조제5항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방재종합대책 계획수립 및 총괄 조

정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민방위과의 소관 사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승계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총무국)①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 ②~④(생략) ⑤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도시방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6조(총무국)①민방위재난관리과..... ②~④(현행과 같음) ⑤민방위재난관리과 1.~4. (현행과 같음) 5. 도시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2. 1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2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1995년 12월 15일
- 다. 상정일자: 제35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95.12.16.)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이춘기

가. 개정이유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의 정원승인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본청 정원의 총수 905명을 5명 증원하여 910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 직속기관(보건소)정원의 총수 71명을 5명 증원하여 76명으로 함(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연구·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95년 9월 4일자로 서울시장의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승인이 시달되고 95년 11월 11일자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제장1명과 교통행정과 소속 교통전문요원 4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구본청정원이 905명에서 910명으로 5명 증원되고,
-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전임전문직 가급인 내과의사 1명과 나급인 치과, 영유아실, 결핵실, 성병진료실 근무 의사 4명이 포함되어 71명에서 76명으로 5명 증원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